

기능] 01.경영기본

[규정]16.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규칙]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 01. 01.

주식회사한라홀딩스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제 2 장 구 성

- 제 3 조 (구성)
- 제 4 조 (자격요건)
- 제 5 조 (독립성과 객관성)
- 제 6 조 (선임)
- 제 7 조 (임기)
- 제 8 조 (위원장)

제 3 장 운 영

- 제 9 조 (연간계획 수립)
- 제 10 조 (회의의 소집)
- 제 11 조 (소집절차)
- 제 12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제 13 조 (의사록)
- 제 14 조 (회의 이외의 활동)

제 4 장 직무와 권한

- 제 15 조 (권한)
- 제 16 조 (의무)
- 제 17 조 (책임)
- 제 18 조 (부의사항)
- 제 19 조 (재무보고)
- 제 20 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 제 21 조 (내부신고)
- 제 22 조 (재산의 조사)
- 제 23 조 (거래의 조사)
- 제 24 조 (이사회 보고)
- 제 25 조 (주주 등 의사소통)

제 5 장 평가 및 관리

제 26 조 (평가)

제 27 조 (보수)

제 28 조 (교육)

제 6 장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제 29 조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제 30 조 (외부감사인 선임의 보고)

제 31 조 (외부감사의 실시)

제 32 조 (외부감사인의 변경)

제 33 조 (외부감사인의 해임)

제 34 조 (외부감사의 종료)

제 35 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 7 장 기타사항

제 36 조 (내부통제)

제 37 조 (리스크관리)

제 38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제 39 조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제 40 조 (기타회의)

제 41 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 42 조 (경비)

제 43 조 (규정의 개정)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라홀딩스(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구 성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 제 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인 위원회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자격요건)

- ① 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 만 아니라 제542조의8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②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위원회 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 5 조(독립성과 객관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선임)

- ① 위원회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인 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조(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 8 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 9 조(연간계획 수립)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장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에게 위원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일을 정하여 적어도 1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 조(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위원회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13 조(의사록)

-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중요 토의내용 또는 결의사항의 경우 감사위원별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회의 이외의 활동)

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의 이외의 활동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장 권한과 의무

제 15 조(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내 정보 일체와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필요할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회사 내 정보 일체와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비감사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는다.
-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⑩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⑪ 위원회는 회사의 부정방지프로그램(내부신고제도 등) 운영 여부를 감독한다.
- ⑫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며, 필요 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의무)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하고 그 감사록에 감사를 실시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⑧ 감사위원이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업무.재산 조사
 - 나. 자회사의 조사
 - 다. 이사의 보고 수령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마.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바. 감사계획 및 결과
 - 사.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아.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자.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차.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타.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파.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나.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재무보고)

- ① 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의 다음 각 호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 1.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의 전문성
 - 2.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의 충분한 인력 보유 여부
 - 3. 회계 및 재무기능 총괄 경영진의 적절한 경험 보유 여부

제 20 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 ① 외부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외부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내부신고)

- ①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신고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가 부정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부정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2 조(재산의 조사)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거래의 조사)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이사회 보고)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감사수행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주 등 의사소통)

- ① 위원회는 이사회 간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해야 하며,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을 시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가 및 관리

제 26 조(평가)

- ① 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감사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② 위원회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전반을 포괄한다.
 1. 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2. 재무보고 감독 및 외부감사 감독
 3.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4.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 ③ 위원회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연 1회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제 27 조(보수)

- ① 감사위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
 2. 위원회 업무 수행 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3. 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 ② 위원회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의 등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 28 조(교육)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제 29 조(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30 조(외부감사인 선임의 보고)

- ①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주주에게 다음 각 호를 통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 대상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
 2.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 31 조(외부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서 기준 연1회, 모범규준은 최소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 관련 다음 각 호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1. 외부시장 정보(환율, 유가 변동, 원재료 가격 변동 등)
 2.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
- ④ 위원회는 감사계약에 따라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외부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외부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33 조(외부감사인의 해임)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외부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② 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외부감사의 종료)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 결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계약체결 시의 계약과정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의견 변형이 있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 감사인 선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5 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위원회는 직전사업년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해임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 장 기타사항

제 36 조(내부통제)

- ①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고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37 조(리스크관리)

- ① 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 38 조(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회사의 대표자는 매사업년도마다 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대리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그 사유를 위원회 및 이사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 가. 보고내용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나. 보고내용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다. 보고내용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 ①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의 승인 권한 및 책임이 있다.
- ②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 관리한다.

제 40 조(기타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 41 조(전담부서의 설치)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42 조(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43 조(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승인 후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동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